

창원문화재단 아르코공연연습센터@창원 운영내규

제12조(대관취소) 재단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1. 연습센터 대관 운영내규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
2.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때
3.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제한의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
4. 정해진 기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
5. 사용권을 타 단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
6. 타 대관단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7. 음주, 흡연, 기물파손 및 유해행위 등 규정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
8. 관리자가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9. 기타 재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